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8호 2021. 5. 7(금)

선 람	기관의 장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1-69호 남원 도시관리계획(학교:남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
- 남원시 고시 제2021-7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1-1017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21-69호

남원 도시관리계획(학교:남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학교:남원초등학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5월 7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학교:남원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학교:남원초등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학교	초등학교 (남원초등학교)	남원시 금동 343-1	29,442	(감)2,356	27,086	전라북도고시 제1980-238호 (1980.11.19.)	-

-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고
3	학교	◦남원초등학교 면적변경 : 29,442㎡ → 27,086㎡ (감 2,356㎡)	◦인주변 주택지와 교육시설 등의 근접성을 고려 접근성이 우수한 남원 초등학교 유희부지에 남원시 서부권(금동, 노암동, 조산동 일원)의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학교시설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자 함	

2.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 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21-70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1년 5월 7일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347,354	-	347,354	100.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지리산 웰빙허브 산업특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복합형	소 계	-	345,713	-	345,713
				특 정 형	운봉읍 용산리 717-8번지 일원	41,112	-	41,112
				관광휴양형	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	304,601	-	304,601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16	4,498	39,999	3	528	5,665	3	386	6,061	10	3,584	28,273
중로	7	1,426	18,810	-	-	-	3	386	6,061	4	1,040	12,749
소로	9	3,072	21,189	3	528	5,665	-	-	-	6	2,544	15,524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구간내)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41	15	국지 도로	157	중로2-105 용산리 771-1도	소로3-605 용산리 377-5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2	342	18	국지 도로	98	중로3-343 용산리 265-1	중로3-341 용산리 265-1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5.	
기정	중로	2	105	15	보조 간선	1,164 (131)	중로2-101 동천리 419-3	허브밸리입구 용산리 771-1	일반 도로	운봉 초교	1977. 12.30.	
기정	중로	3	341	12	국지 도로	82	중로3-342 용산리 718-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2	12	국지 도로	323	중로2-341 용산리 682-3구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3	12	국지 도로	115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중로	3	344	12	국지 도로	520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구역계 용산리 446-1목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 도로 결정(변경) 조서-계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구간내)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1	601	10	특수 도로	81	중로3-342 용산리 265-1도	중로2-342 용산리 265-1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07. 01.05.	
기정	소로	1	602	10	국지 도로	72	중로3-344 용산리 265-1도	소로3-605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1	603	10	국지 도로	375	중로3-344 용산리 446-1목	소로3-609 용산리 763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5	6	국지 도로	1,628	중로3-341 용산리 265-1도	중로2-341 용산리 265-1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6	6	국지 도로	187	소로3-605 용산리 산8입	구역경계 용산리 산10입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7	4	특수 도로	156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입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8	4	특수 도로	123	소로3-605 용산리 442-3목	소로3-605 용산리 442-4입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09	6	특수 도로	310	소로2-601 용산리 721-10도	소로1-603 용산리 717-12도	보행자 전용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기정	소로	3	610	6	국지 도로	140	소로2-601 용산리 757-2도	소로1-603 용산리 757-2도	일반 도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2013. 12.24.	

☑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2,562	-	32,562		
기정	341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18답 일원	3,034	-	3,034	2007.01.05.	
기정	342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6-1차 일원	4,053	-	4,053	2007.01.05.	
기정	343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268-6차 일원	10,263	-	10,263	2007.01.05.	
기정	344	주차장	운봉읍 용산리 724-4차 일원	15,212	-	15,212	2007.01.05.	

☑ 방재시설(변경없음)

○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우수지	저류시설	운봉읍 용산리 714-1답 일원	2,200	-	2,200	2013. 12. 24.	

☑ 공간시설 :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18,898	-	18,898		
기정	341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7-5답 일원	692	-	692	2007.01.05.	
기정	346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1,449	-	1,449	2007.01.05.	
기정	347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3,858	-	3,858	2009.07.14.	
기정	348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도 일원	2,957	-	2,957	2009.07.14.	
기정	349	녹지	경관녹지	운봉읍 용산리 산6-2암 일원	4,361	-	4,361	2009.07.14.	
기정	350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4-8공 일원	2,082	-	2,082	2013.12.24.	
기정	352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14-8공 일원	1,034	-	1,034	2013.12.24.	
기정	35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71-2차 일원	1,807	-	1,807	2013.12.24.	
기정	35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268-6차 일원	658	-	658	2013.12.24.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0,942	-	210,942	
A	소계		37,822	-	37,822	
	A-1	용산리 266-14	15,427	감) 1,318	14,109	허브복합토피아관
	A-2	용산리 268-12	15,431	증) 1,318	16,749	아로마테라피관
	A-3	용산리 446-3	4,437	-	4,437	관리동
	A-4	용산리 423-10	1,613	-	1,613	미니동물원
	A-5	용산리 423-10	914	-	914	라이더관리소
D	소계		110,346	감) 1,508	108,838	
	D-1	용산리 446-20	3,366	-	3,366	녹지
	D-2	용산리 393	1,273	-	1,273	녹지
	D-3	용산리 423-1	1,533	-	1,533	녹지
	D-4	용산리 266-2	3,752	-	3,752	녹지
	D-5	용산리 442-4	25,237	-	25,237	녹지(토피어리원)
	D-6	용산리 442-3	16,497	감) 2,510	13,987	녹지(미로원)
	D-7	용산리 442-3	12,145	-	12,145	녹지(향기원)
	D-8	용산리 산10	17,198	증) 1,002	18,200	녹지(철쭉원)
	D-9	용산리 714-1	8,921	-	8,921	허브정원1
	D-10	용산리 717-1	14,263	-	14,263	허브정원2
	D-11	용산리 721-4	3,692	-	3,692	허브재배체험장
	D-12	용산리 772	2,469	-	2,778	녹지
E	소계		1,003	-	1,003	
	E-1	용산리 266-13	641	-	641	화장실1
	E-2	용산리 442-6	362	-	362	화장실2
F	소계		16,494	-	16,494	
	F-1	용산리 717-3	3,928	-	3,928	향기놀이터
	F-2	용산리 721-4	3,667	-	3,667	야외공연장2
	F-3	용산리 724-1	8,899	-	8,899	허브체험장2
G	소계		45,277	증) 1,508	46,785	
	G-1	용산리 442	11,083	-	11,083	중앙광장
	G-2	용산리 산6-2	3,286	-	3,286	허브체험장1
	G-3	용산리 442-3	2,705	-	2,705	야외공연장1
	G-4	용산리 442-3	1,439	증) 2,510	3,949	야영장
	G-5	용산리 442-5	1,800	-	1,800	풍속문화전시관
	G-6	용산리 442-3	1,500	감) 1,002	498	전망대
	G-7	용산리 442-4	23,464	-	23,464	에코어드벤처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 15,427㎡ → 14,109㎡ (감 1,318㎡)	·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
A-2	· 15,431㎡ → 16,749㎡ (증 1,318㎡)	·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남원시 소유 토지 교환에 따른 변경
D-6	· 16,497㎡ → 13,987㎡ (감 2,510㎡)	·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야영장부지 면적 증가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축소
D-8	· 17,198㎡ → 18,200㎡ (증 1,002㎡)	· 전망대부지 이전 및 면적 축소에 따른 녹지용지 면적 증가
G-4	· 1,439㎡ → 3,949㎡ (증 2,510㎡)	· 야영장부지내 복합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증가
G-6	· 1,500㎡ → 498㎡ (감 1,002㎡)	· 전망대부지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1 허브 복합 토피 아관	용산리 266-1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나목, 라목, 마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A-2 아로마 테라 피관	용산리 266-1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목, 카목, 타목 중 안마사술소, 파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라목(펜션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지상 4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3 관리동	용산리 446-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A-4 미니 동물원	용산리 423-10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A-5 라이더 관리소	용산리 423-10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1 화장실1	용산리 266-1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E-2 화장실2	용산리 442-6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F-1 향기 놀이터	용산리 717-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F-2 야외 공연장2	용산리 721-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F-3 허브 체험장2	용산리 724-1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1 중앙 광장	용산리 44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2 허브 체험장1	용산리 산6-2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바목, 사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3 야외 공연장1	용산리 442-3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4 야영장	용산리 442-3	용도	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허용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라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탁시설 중 다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구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5 풍속 문화 전시관	용산리 442-5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구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G-6 전망대	용산리 442-3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구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구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G-7 에코 어드 벤처	용산리 442-4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지상 2층(지하 1층)	
		배치	· 주방향은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형태	· 옥상층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경관적 저해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 외벽이나 기초벽 등은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마감 처리	
		색채	· 주조색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되 가급적 원색 사용을 지양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수량은 1업소당 2개 이하의 간판 설치를 원칙
- 가로형 간판중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로 설치하되 판류형은 제한하고, 양질의 자재로 마감한 입체형 간판을 권장
- 돌출형 간판은 2층이상부터 설치하고,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8m이내, 세로 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
-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접착성이 있는 비닐 또는 접착시트를 활용한 띠 형태로 한정하고, 전광류의 사용은 제한

나.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교통시설 :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노선수	연장	면적(m ²)
합계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소로	4	1,241	9,293	-	-	-	3	968	7,739	1	273	1,55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660	중로3-344 용산리742-6	중로3-344 용산리742-2	일반 도로		2007. 1. 5.	
기정	소로	2	602	8	특수 도로	164	중로3-342 용산리756-2	소로2-601 용산리756-2	보행자 전용		2007. 1. 5.	
기정	소로	2	603	8	특수 도로	144	중로3-342 용산리265-1	소로2-601 용산리761-3	보행자 전용		2007. 1. 5.	
기정	소로	3	603	6	특수 도로	273	중로3-344 용산리742-4	소로2-601 용산리721-10	보행자 전용		2007. 1. 5.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047	-	3,047		
기정	342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3공 일원	571	-	571	2007.01.05.	
기정	343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5공 일원	554	-	554	2007.01.05.	
기정	344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42-7공 일원	906	-	906	2007.01.05.	
기정	345	녹지	완충녹지	운봉읍 용산리 758-2공 일원	1,016	-	1,016	2007.01.05.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번호		위치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8,772	-	28,772	
B	B-1	B-1	용산리 714-15장	3,166	-	3,166	
	B-2	B-2	용산리 714-10장	2,329	-	2,329	
	B-3	B-3	용산리 714-22답	1,387	-	1,387	
	B-4	B-4	용산리 717-29장	4,647	-	4,647	
	B-5	B-5	용산리 717-8장	4,565	-	4,565	
	B-6	B-6	용산리 717-11장	4,164	-	4,164	
	B-7	B-7	용산리 721-7장	4,330	-	4,330	
	B-8	B-8	용산리 721-8장	4,184	-	4,184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B-1 ~ B-8 허브 제품 가공 단지	용산리 일원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다목 중 목욕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 중 일반숙박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지상 2층	

※ B-1~B-8 까지의 허용용도 중 공장은 다음과 같다

1. 허브제품생산 및 가공공장으로 한정
2. 허브생산·가공제품 중 한국표준분류표 2433의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의 공장은 허용
3. 부대시설 : 제품전시장 및 판매장, 원재료 등을 활용한 체험시설 등

※ 목욕장 : 허브원재료 및 생산품을 활용한 족욕카페, 체험스파 및 반신욕장 등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로 한정

남원시 공고 제2021 - 1017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맞추어 정비

-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나.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 (안 제4조제3호)

다.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26.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1년 5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실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km25307@korea.kr), fax(063-620-670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실 예산팀(☎063-620-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 05.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된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맞추어 정비
 -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나.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 추가 (안 제4조제3호)
- 다. 그 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라.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안 제2조)
 -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의 인용 조항 등 개정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 2021. 05. 07. ~ 2021. 05. 26.(20일간)
 - 결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

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경제농정국장, 안전건설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용평가) 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지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5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